

#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(안)

2019. 12. 4.

문서번호	인재경영팀-29320	책임	인재경영 팀장	지원본부 장	대표이사		
결재일자	2019.12.05.	12/04 김경아	12/04 강경남	12/04 김상헌	전결12/05 최경란		
공개여부	공개	협 조		책임			
방침번호	대표이사방침 제(2914)호			12/04 정은석			

추진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합감사 결과 현지조치 요구(감사실-1175, 2019.11.04)</li> <li>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</li> <li>-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지침(2019.07.09)</li> <li>-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 일부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청취 및 동의요청 회신(노동조합-103, 2019.12.03)</li> </ul>		
대 내 외 협력현황	부서(단체)명	협의내용	협의결과
	노동조합	내규 개정 의견청취 및 동의 여부 요청	의견청취 및 동의
사 업 비			

서울디자인재단 (인재경영팀)

# 사전 검토항목

※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✓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토여부 '✓' 표시			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시 민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 )	무 ✓
	이 해 당 사 자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 )	무 ✓
	전 문 가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 )	무 ✓
	옴 브 즈 만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 )	무 ✓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법 령 규 정 :	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	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	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
		기타 ✓	무 <input type="checkbox"/>	
		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	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	균형인지 ✓
	기 타 :	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	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	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
	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	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	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	무 ✓
타 자 원 의 활 용	중 앙 부 처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 )	무 ✓
	민 간 단 체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 )	무 ✓
	기 업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 )	무 ✓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관 계 기 관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 )	무 ✓
	관 련 단 체 :	유 ✓	( 디자인재단 노동조합 )	무 <input type="checkbox"/>

# 인사규정 시행 내규 일부 개정(안)

「종합감사 결과 현지조치 요구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근거하여 내규를 개정하고자 함

## 1. 추진근거

- 종합감사 결과 현지조치 요구(감사실-1175, 2019.11.4.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
-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지침(2019.07.09)
-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 일부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청위 및 동의요청 (노동조합-103, 2019.12.03)

## 2. 제안이유

- 재단 종합감사('19.09.17~'19.10.08) 현지조치 요구에 따라 직원 채용시험의 응시 구비서류에 대한 내규 정비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에 근거하여 채용시험시 부가점수 가산의 기준을 정비

#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**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**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. 다만,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(換算)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지침의 직원인사\_시험의 방법에 근거하여 면접응시자의 성별을 기록·유지토록 개정

###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 지침

#### Ⅲ. 직원의 인사

##### ④ 시험의 방법

##### 가. 시험의 방법

-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·유지하고, 기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

### 3. 주요골자

□ **직원채용 시험의 응시구비서류 제출시기 명확화**

① **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부합되도록 입사지원서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종료 후 제출(제10조 제1항, 2호~8호)**

○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따르면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을 요구할수 없게 되어 있어, 증빙자료 사전제출 요구시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면접전형 종료시 제출받고 있으나 실제 운영방법과 내규가 상이하여 종합감사시 현지조치 요청에 의거 **입사지원서를 제외한 응시구비서류는 면접전형 종료 후 제출토록** 개정함.

□ **면접 응시자의 성별 기록을 통한 성차별 방지**

① **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·유지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(제17조 제5항)**

○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·유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

□ **합격자 결정시 부가점수 가산에 대한 적용 방법 개정**

① **필기시험의 합격자 선정시 시험성적이 매과목 득점 40% 이상인자에 한하여 부가점수 가산(제18조 제1항)**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」에 따르면 “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”로 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여 <별지3>의 가산점수 부가시 매과목 득점 40% 이상인자 중에 부가점수를 가산하도록 함.

※ <별지3>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

구 분	가 산 점 수	비 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<개정 2013.03.22.>	각 전형별 만점의 5%, 10%	단, 보훈가점은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. <개정 2018.08.22.>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제27조 <신설 2019.01.21.>	각 전형별 만점의 10%	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<신설 2019.01.21.>	각 전형별 만점의 10%	

②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시 부가점수를 가산한 평균득점이 70% 이상인 자중 고득자 순으로 선정(제18조 제2항)

○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시 부가점수 가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행 운영방법으로 명시함

---

### 3. 참고사항

---

-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절차: 노조 의견청취 및 동의 ⇨ 대표이사 승인 ⇨ 이사회 보고
- 시행일: 대표이사 결재일

별지 1.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1부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붙임 1. 인사규정시행내규 전문 1부. 끝.

## 【별지】

#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(안)

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○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① 직원채용시험의 응시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입사지원서를 제외한 응시구비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종료 후 제출토록 한다.

○ 제1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·유지하고,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같이 개정한다.

- 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성적이 매 과목 득점 40% 이상인 자 중 <별지3>에 의한 부가점수를 가산한 시험성적이 전 과목 평균득점 60%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의 성격에 따라 점수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. 다만,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.

○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같이 개정한다.

- ① 면접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평균득점에 <별지3>에 의한 부가점수를 가산한 평균득점이 70%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【별지】**

**신.구조문 대비표**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10조(응시구비서류)</b> ①직원채용시험의 응시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입사지원서&lt;개정 2013.10.24.&gt;</li> <li>2.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(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학사 성적증명서 포함)</li> <li>3.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확인 가능서류(주민등록초본 등)</li> <li>4. 경력증명서</li> <li>5. 공인자격증, 외국어인증 성적증명서(해당자)</li> <li>6. 재단사업과 관련한 직무수행 계획서 또는 사업 제안서(해당자)</li> <li>7. 연구실적, 입상실적 및 표창장 (해당자)</li> <li>8.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(해당자) 및 장애인 증명서(해당자)&lt;개정 2013.10.24.&gt;</li> </ol>	<p><b>제10조(응시구비서류)</b> ①직원채용시험의 응시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입사지원서를 제외한 응시구비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종료 후 제출토록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입사지원서</li> <li>2.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(<del>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</del>)(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학사 성적증명서 포함)</li> <li>3.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확인 가능서류(<del>주민등록초본 등</del>)</li> <li>4. 경력증명서(해당자)</li> <li>5. 공인자격증, 외국어인증 성적증명서(해당자)</li> <li>6. 재단사업과 관련한 직무수행 계획서 또는 사업 제안서(해당자)</li> <li>7. 연구실적, 입상실적 및 표창장(해당자)</li> <li>8.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(해당자) 및 장애인 증명서(해당자), 북한이탈주민 확인서(해당자)</li> </ol>
<p><b>제17조(면접전형 평정요소 등)</b></p> <p>① ~ ④ 생략</p> <p>⑤ &lt;신설&gt;</p>	<p><b>제17조(면접전형 평정요소 등)</b></p> <p>① ~ ④ 생략</p> <p>⑤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·유지하고,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<b>제18조(합격자 결정)</b> ①필기시험 합격자는 &lt;별지 3&gt;에 의한 부가점수를 가산한 시험성적이 매 과목 득점 40%, 전 과목 평균득점 60%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의 성격에 따라 점수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. 다만,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. &lt;개정 2019.01.21.&gt;</p> <p>②면접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평균득점이 70%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.&lt;개정 2013.03.22.&gt; &lt;개정 2013.10.24.&gt;</p>	<p><b>제18조(합격자 결정)</b> ①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성적이 매 과목 득점 40% 이상인자 중 &lt;별지 3&gt;에 의한 부가점수를 가산한 시험성적이 전 과목 평균 득점 60%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의 성격에 따라 점수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. 다만,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. &lt;개정 2019.01.21.&gt;</p> <p>②면접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평균득점에 &lt;별지 3&gt;에 의한 부가점수를 가산한 평균득점이 70%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.</p>